

## 임예진 관세법(2025년 대비) 개정사항 (2)

- 관세법 시행령 2025. 2. 28. 개정 [시행 2025. 2. 28.]

### \* 공지사항

※ 관세사 시험은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5년 2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 중에서

2025년 2월 28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정된 규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개정특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24 첫 번째 박스 : 영 제3조 제1항 ① ㉔ 수정

㉔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개정 전	개정 후
지식재산권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

p.51 박스 : 영 제15조 제5항 ②, ③, ④ 수정 및 ⑤ 신설

**법 제27조 제2항 관련 시행령**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영 제15조 제5항]**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송품장
- ②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 ③ 다음의 자료
  - 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㉕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㉖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 ㉗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영 제31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 ⑤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p.52 : 영 제15조 제2항 ①, 제3항 수정

**제2항** 가격신고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①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②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 ③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3항** 포괄가격신고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p.57 : 영 제16조 제5항 본문 수정

**제5항** 확정가격신고 제출서류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영 제15조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영 제15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영 제15조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p.94 첫 번째 박스 : 영 제31조 제7항 ④ 전체 수정

- ④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 1)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 2)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개정 내용
과세가격 결정 요건 중 신고기간 개정

p.98 : 영 제31조 제6항 ⑤ 신설

- ⑤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반려사유 ⑤ 추가신설

p.102 박스 : 영 제31조의5 제6항 ② 수정 및 ③ 신설

- ②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
- ③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개정 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사항 추가 신설

p.105 : 영 제32조의3 수정

**법 제38조 제5항 관련 시행령**

**세액의 정정 [영 제32조의3]**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107 : 영 제32조의2 제1항 수정

**제1항 자율심사업체로의 승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p.108 : 영 제32조의2 제6항 ① 수정

①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38조 제3항의	법 제38조 제4항의

p.108 : 영 제32조의5 제1항, 제2항 수정

**제1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항 관세납부대행기관**

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p.309 : 영 제56조 제3항 ⑤ 수정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의 다음 날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제5항에 따른	제9조 제6항에 따른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p.333 박스 : 영 제136조 수정

**법 제111조 제2항 ⑤ 관련 시행령**

**중복조사의 금지 [영 제136조]**

법 제111조 제2항 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②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③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p.351 첫 번째 박스 : 영 제141조의11 제1항 ⑤ 수정

- ⑤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전	개정 후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p.369 : 영 제144조의3 제6항 ③ 수정

- ③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전	개정 후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p.416 : 영 제163조 ④ 신설

- ④ 다음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 ㉠ 선박용품
  - ㉡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개정 내용

승선 또는 탑승신고서 기재사항 ④ 추가신설

p.451 박스 : 영 제185조 제9항 삭제

~~제9항. 보세사 시험업무 위탁~~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 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502 박스 : 영 제192조의2 제1항 본문 수정

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p.503 박스 : 영 제192조의2 제5항 ①, ② 수정

- ①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92조의3 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p.554 : 영 제231조 제2항 본문 수정

### 제2항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584 박스 : 영 제237조 수정

#### 법 제235조 제2항 관련 시행령

#####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영 제237조]

##### 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 ②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 ③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 ④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항. 세부사항 규정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
※ 영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2조 동일 개정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등	

p.585 첫 번째 박스 : 영 제238조 ② 수정

②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p.585 두 번째 박스 : 영 제240조 제1항 본문 수정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586 박스 : 영 제239조 제1항, 제2항 본문 수정

**제1항. 통관보류 등**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 등이 요청된 법 제235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통보**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p.588 : 영 제242조 수정

**영 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제1항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 제공요구**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및 견본품 채취 요청**

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3항 세부사항 규정**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p.590 박스 : 영 제245조 제1항 ④ 수정

- ④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경우

p.639 : 영 제261조 ⑤, ㉞ 수정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 ㉞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㉟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 ㊱ 그 밖에 ㉞ 및 ㉟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p.615 : 법 제248조 제1항 수정

**법 제267조 관련 시행령**

**무기등 관리 의무 [영 제265조]**

**제1항. 안전기준 마련**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기록 및 보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무기	무기등

p.706 첫 번째 박스 : 영 제274조 수정

**법 제321조 제1항 관련 시행령**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영 제274조]**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① 세관의 업무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시간	업무시간

p.706 두 번째 박스 : 영 제275조 제1항 수정

**임시업무 및 시간 외 물품취급 [영 제275조]**

**제1항. 업무시간 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대한 통보서**

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 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전	개정 후
임시개청	임시업무
개청시간외	업무시간외

p.710 제5항 밑 : 영 제276조의2 신설 / 기존 영 제276조의2 → 제276조의3으로 변경

**법 제322조 제5항 관련 시행령**

**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영 제276조의2]**

**제1항.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기관**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②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 ③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 것

**제2항. 대행기관 지정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 지정 여부 결정**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항. 지정 해제**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제5항.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6항.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7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736 박스 : 영 제288조 제5항, 제6항, 제7항 수정

**법 제329조 제4항 관련 시행령**

**매각 전 통고 업무 위탁 [영 제288조 제5항]**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보세운송 도착보고 수리 업무 위탁 [영 제288조 제6항]**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보세사·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 위탁 [영 제288조 제7항]**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 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 ①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222조 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 ③ 법 제2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p.737 첫 번째 박스 : 영 제288조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수정

**법 제329조 제4항 관련 시행령**

**보세사 시험 업무 위탁 [영 제288조 제8항]**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 제5항 ①에 따라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검사비용 지원업무 일부 위탁 [영 제288조 제9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5항 ②에 따라 법 제17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 업무 일부 위탁 [영 제288조 제10항]**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 제5항 ③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예비심사 지원 업무 일부 위탁 [영 제288조 제11항]**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 제5항 ④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 일부 위탁 [영 제288조 제12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5항 ⑤에 따라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737 두 번째 박스 : 영 제288조 제13항 수정 및 제14항 신설

**영 제288조 관련 시행령**

**위탁 업무 내용 고시 [영 제288조 제13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지휘·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영 제288조 제14항]**

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